

경찰관의 대민 접촉

성적 지향 또는 인지도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및 인종은
경찰관이 민간인을 불심검문하거나, 위협하거나, 수색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허용 행위

- 민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민간인 불심검문(일시
구금)
- 민간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민간인의 몸수색(겉옷 가지를
더듬으며 소지 여부 확인)
- 민간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색

경찰관은 요청 시 자신의 성명과 신분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례하거나,
동성애적 혐오 또는 트랜스 혐오 비방 또는 그
밖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위법 행위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다음에 민원 제기

NYC 시민민원심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CCRB)

CCRB에 전화: 1-800-341-2272 또는 311.
온라인으로 민원 제기:

www.nyc.gov/ccrb

CCRB는 경찰국 소속이 아닌 독자적
기관입니다. 시민 조사관은 민원을 공정하게
수사합니다. 위원회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CCRB 변호인은 가장
속독한 징계인 행정 혐의를 받는 해당
경찰관을 기소합니다.

CCRB는 당사자에게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세 정보: www.nyc.gov/ccrb